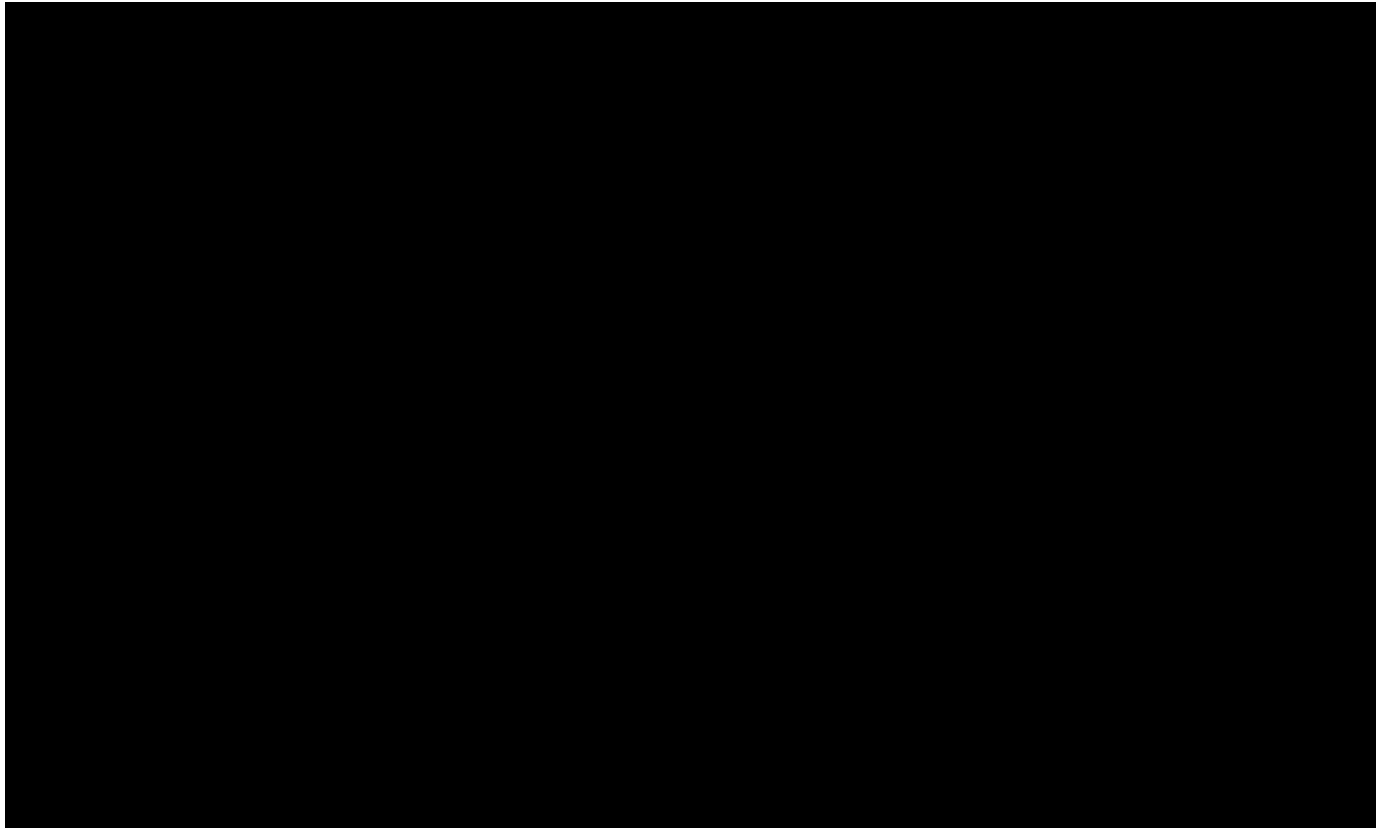


공휴일

모든 고용인은 공휴일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일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합리적인 이유 (reasonable grounds)가 있다면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 혹은 지역의 공휴일 목록을 확인하시려면, [공휴일 목록 페이지 \(www.fairwork.gov.au/leave/public-holidays\)](http://www.fairwork.gov.au/leave/public-holidays) 로 이동하세요.

호주 공휴일에 관한 짧은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공휴일 급여

공휴일에 일하지 않는 풀타임 및 파트타임 고용인은, 공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평균 근무일의 보통 근무 시간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일부 고용인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penalty rate)이 적용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최저 시급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다른 휴가 기간 내의 공휴일

고용인이 연차휴가 혹은 병가를 사용할 때에도 여전히 공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해당 급여는 휴가 수당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휴일이 고용인이 보통 근무하는 날이어야만 합니다.

다음 단계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공휴일 급여를 확인하기 위해 급여 계산기 ([Pay Calculator \(https://calculate.fairwork.gov.au/findyouraward\)](https://calculate.fairwork.gov.au/findyouraward)) 를 사용하세요.

Contact us

Fair Work Online: www.fairwork.gov.au

Fair Work Infoline: 13 13 94

Need language help?

Contact the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on 13 14 50

Hearing & speech assistance

Call through the National Relay Service (NRS):

For TTY: 13 36 77. Ask for the Fair Work Infoline 13 13 94

Speak & Listen: 1300 555 727. Ask for the Fair Work Infoline 13 13 94

The Fair Work Ombudsman is committed to providing advice that you can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on this website is general in nature. If you are unsure about how it applies to your situation you can call our Infoline on 13 13 94 or speak with a union, industry association or workplace relations professional. Visitors are warned that this site may inadvertently contain names or pictures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who have recently died.